



## 새 법령

new laws  
and  
ordinances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8. 13.] [대통령령 제 30038호, 2019. 8. 13.,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행정의 현장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부 및 국가보훈처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중 대민 관련 업무 및 지역적 사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민간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처장 권한의 위임(제17조의2 신설)

국가보훈처장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 및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함.

나. 교육부장관 사무의 위탁(제45조제8항제4호의2 신설)

「평생교육법」에 따라 폐쇄하거나 인가취소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적부 관리·보관 및 각종 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를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함.

####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8. 13.] [대통령령 제  
30044호, 2019. 8. 13.,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고 해외사업장에서 생

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여 생산하는 경우 해당 기업을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는바, 현재 같은 제품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세분류에 속하는 제품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복귀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그 범위를 동일한 소분류에 속하는 제품으로 완화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9. 8. 13.] [대통령령 제 30043호, 2019. 8. 13,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등급제를 개편하여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한민국의 체육유공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장애를 입은 국가대표선수 또는 국가대표선수를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으로 등록된 사람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변경·확대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8. 13.] [대통령령 제 30039호, 2019. 8. 13.,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이 수행하는 공안(公安) 관련 사무의 범위를 대공(對共)·테러 등으로 한정하고, 선거·노동 및 집단행동 관련 분야를 공안과 병렬적인 전문분야 체제로 개편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에 두는 일부 직위 및 분장 사무 중 “공안”과 관련된 명칭과 사무를 각각 “공공수사”로 변경하고, 공안기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및 시대에 맞지 않는 업무의 정비를 위하여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이 공안부장을 보좌하던 업무 중 일부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19. 8. 13.] [법률 제16435호, 2019. 8. 12.,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전 세계적으로 산업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최근 우리나라의 제조업 가동률과 설비투자 감소, 수익률 저하 등 기존 주력산업의 활력이 저하되면서 지역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 전환 정책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신산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여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산업용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 원활한 자금조달 및 신속한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며, 2019년 8월 12일에 만료되는 이 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범위에 신산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으로서 신산업판정위원회로부터 신산업판정을 받은 기업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을 추가함(제4조).

나.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매각대금 중 일정금액 이상은 사업재편을 위한 부지매입 등에 사용하도록 함(제31조의2 신설).

다.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의 이행 상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라.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및 신산업판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도록 함(제37조의2 신설)

마.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9년 8월 12일까지에서 2024년 8월 12일까지로 5년 연장함(법률 제14030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 3. 시행일

이 법은 2019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시행 2019. 8. 6.] [대통령령 제 30019호, 2019. 8. 6.,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징계 등 혐의자가 서면으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때에는 의견서에 징계 등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위원회는 징계 등의 의결을 할 경우에 징계 등의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심의하여 의결서에 명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주거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9. 8. 6.] [대통령령 제 30032호, 2019. 8. 6.,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은 주거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비 보조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외에도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 2019. 8. 6.] [대통령령 제 30016호, 2019. 8. 6., 제정]

#### 1. 제정이유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특별승진 등의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하는 한편, 적극행정 결과에 대한 징계요구 등 면책 및 징계 등 면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제7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기 위해 적극행정 추진 과제 발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적극행정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함.

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설치(제11조 및 제12조)

- 1)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함.
- 2)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  
사상 우대 조치(제14조 및 제15조)

-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기별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등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야 함.
-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임용, 근속승진 기간 단축 또는 특별승급 등의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해야 함.

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면책 등(제16조 및 제17조)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으며,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결을 하지 않음.

마.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제18조)

-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소송에 관한 재판 확정으로 구상권행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해당 공무

원의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결과인지 여부를 명시해야 함.

-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징계의결 등의 요구를 받은 공무원이 징계 등 면제요건 충족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8. 6.] [대통령령 제 30031호, 2019. 8. 6.,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개발진흥지구 지정·운영에 민간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농림지역에 대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건축제한 요건을 완화하고, 재해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 등 선형(線型) 기반시설을 재해취약성분석 대상에 포함하며,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를 위해 조례로 도시지역의 용도지역을 추가로 세분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별 용적률 하한을 낮추며,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모든 종류의 기반시설을 시장 및 군수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

도록 하고,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중 절토·성토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기준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방화지구 지정을 장려하기 위해 방화지구로 지정된 공업지역에 설치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을 제한을 완화하고, 법령의 명확한 집행을 위해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림지역에 대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및 건축제한 요건 완화(제19조의2제3항 및 제79조제3항)

- 1)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으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농림지역을 추가함.
- 2)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경우로서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농림지역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제한 요건을 완화함.

나. 선형 기반시설을 재해취약성분석 대상에 포함[현행 제21조제2항제4호라목2) 삭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인 재해취약성분석의 대상에서 제

외되던 도시지역 외의 지역 내 도로·철도·가스 등 선형 교통시설 및 공급시설을 재해취약성분석 대상으로 포함하여 선형 기반시설의 안전 강화를 도모함.

**다. 조례를 통한 도시지역의 용도지역 추가 세분화 및 용도지역별 용적률 유연화(제30조제2항 신설, 제85조제1항)**

-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 등은 법령에 따라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등으로 세분화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추가 세분화하여 지정할 수 있음.
- 2)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등의 도시·군계획에 관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하한을 제2종 전용주거지역의 경우 현행 10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낮추는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에 대한 시장 및 군수의 결정 권한 확대(제45조제3항)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모든 종류의 기반시설을 시장 및 군수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확대하되, 철도·항만·공항 등 다수의 시·군과 연계된 기반시

설 중 특별시·광역시·도 등의 도시·군 계획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시장 및 군수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서 제외함.

마.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대상 강화(제51조제2항)

-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도 옹벽의 설치 또는 2미터 이상의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을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포함함.
-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을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성에 맞게 엄격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절토·성토가 수반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2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등의 도시·군계획에 관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바. 방화지구로 지정된 공업지역의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상향(제84조제6항제1호)

공업지역에 대한 방화지구 지정을 장려하기 위해 방화지구로 지정된 공업지역에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전 70퍼센트인 건폐율의 상한을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함.

###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민사집행규칙

[시행 2019. 9. 1.] [대법원규칙 제2855호, 2019. 8. 2.,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 (1) 민사집행법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무익한 항고의 제기 및 대금지급의 지체 등으로 인한 집행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율에 의한 금액을 보증금에서 몰취하거나 지연이자를 내게 하고 있음(민사집행법 제130조제7항, 제138조제3항)
- (2) 민사집행규칙 제75조는 민사집행법 제130조제7항과 제138조제3항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이율에 관하여 연 1할 5푼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남항고 방지를 위한 위 조항의 실효성 확보와 경매절차의 지연방지의 목적을 유지하면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그 이율을 연 100분의 12로 변경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민사집행규칙상의 법정이율을 현 연 1할 5푼에서 연 100분의 12로 개정함(제75조)

### 3. 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가사소송규칙

[시행 2019. 8. 2.] [대법원규칙 제 2856호, 2019. 8. 2.,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하여 양육비 지급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인 감치의 집행기간을 연장하고, 가사재판 절차에서 감치의 집행기간을 명확히 규정함

### 2. 주요내용

- (1) 감치의 집행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1조제5항을 「가사소송규칙」에서 준용하지 않는 것으로 추가함(제130조)
- (2) 법 제67조제2항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감치의 집행기간을 6개월로 함(제136조의2 신설)

###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